'97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(안)

의안번호	138

제출년월일 : 1997년 10월 25일
제 출 자 : 영 등 포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○ 세입(보조금, 조정교부금) 증가

2. 주요골자

○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예산액	기정예산액	제2회추경(증△감)	증감율(%)
총계		149,210,842	146,175,146	3,035,696	2.1
일반회계		117,507,324	114,471,628	3,035,696	2.7
특별회계	소계	31,703,518	31,703,518	0	
	의료보호기금	1,596,556	1,596,556	0	
	주민소득지원	724,276	724,276	0	
	주차장	29,382,686	29,382,686	0	

○ 일반회계 ———— 3,035,696천원
- 보 조 금 ········ 2,340,696천원
- 조정교부금 ········ 695,000천원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건(안)

의안번호	141

제안년월일 : 1997년 11월 6일
발 의 자 : 유낭열의원외7인

1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0조의3 및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7. 7.14 제50회 영등포구의회(임시회)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조사대상 업무의 과다로 조사기간을 연장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조사대상 관련 업무의 확대와 업무내용의 과다로 당초 조사기간인 '97. 8. 1일부터 '97.11.20일까지 92일간 연장코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중간결과보고서